

#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특별공급 일정 변경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I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209-1 일원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9층 6개동 총 999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총 80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건설량 10% 범위) (단위 : 세대)

구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예비입주자)													
주택형(약식표기)		59A	59B	59C	59D	59E	84A	84B	84C	84D	84E	84F	84G	합계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1(1)					2(1)	2(1)	3(1)	1(1)	1(1)		1(1)	11(7)	
	장기복무 제대군인		1(1)				2(1)	2(1)	3(1)	1(1)	1(1)			10(6)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1)			1(1)	1(1)	3(1)	1(1)	1(1)		1(1)	9(7)	
	중소기업 근로자	1(1)	1(1)	1(1)	1(1)	1(1)	3(1)	3(1)	5(2)	2(1)	2(1)	1(1)	1(1)	22(13)	
	장애인	충청남도	1(1)	1(1)	1(1)			3(1)	3(1)	4(2)	2(1)	1(1)			16(9)
		대전광역시						2(1)	2(1)	1(1)	1(1)				6(4)
		세종특별자치시						1(1)	1(1)	2(1)		1(1)		1(1)	6(5)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면적 및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괄호(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배정세대입니다.
- ※ 반드시 주택형으로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예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예정)	2022. 12. 01.(목)	일간신문 및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분양홈페이지 게시
견본주택 오픈일(예정)	2022. 12. 02.(금)	'힐스테이트 천안역 견본주택'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35번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시(예정)	2022. 12. 06.(화)	인터넷 청약접수(08:00~17:30) -한국부동산원'청약Home'홈페이지 ( <a href="https://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a>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예정)	2021. 12. 14.(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35번지)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10:00~14:00)가 가능합니다. (※은행창구 접수 불가)

## II 특별공급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01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10년 이상 복무 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천안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단, 철거민 대상자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세대 내 1회 한정)

### ■ 행정사항

- 주택소유 여부 등 청약 적격 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 여부,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명단으로 관리되며 평생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박탈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 여부 확인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 추천(선정)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

### Ⅲ 당첨자선정 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동·호수 변경 불가)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는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됩니다.

### Ⅳ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해당 기관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해당 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도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신청(세대원 전원 해당)이 불가하며, 중복당첨 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본인이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및 계약 이후라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동·호수 변경 불가)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 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2. 12. 01.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 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01.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